

2022 다 265123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1) 쟁점

•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① 청구범위 해석 기준 및 그에 따른 구성요소의 동일성 인정 여부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정해지며, 청구범위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되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야 함.
-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거나, 균등침해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② 과제 해결원리에 따른 균등침해 판단

- 균등침해 판단 시 대상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명세서의 설명,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해야 함.

③ 구성요소 일부 결여 시 침해 성립 여부

-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경우, 그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며, 구성요소 중 일부만을 갖춘 대상제품 등은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음 (전부 구성요소의 원칙).

• 사실관계: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칭을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로 하며, 정정된 청구범위 제 1 항 및 제 9 항을 포함한다.
- 원심은 이 사건 제 1 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2 및 1-3, 이 사건 제 9 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9-3 및 9-8 의 기술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이들 구성요소가 피고 제품 1 의 대응하는 구성요소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은 명세서의 발명 설명 및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제 1 항 정정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는 원심 판시 제 1 기술적 특징에 있고, 이 사건 제 9 항 정정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는 원심 판시 제 1, 2 기술적 특징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제품 1 은 이 사건 제 1 항, 제 9 항 정정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달라 균등침해 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원심은 이 사건 제 1 항, 제 9 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냉온정수시스템', '냉온정수기'는 물건의 발명인 이 사건 제 1 항, 제 9 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인데, 피고 제품 2 는 온수에 관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냉온정수시스템'이나 '냉온정수기'가 아니므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법리적용: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해석(청구범위 해석 및 구성요소 동일성 판단) 관련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에 따라 정해짐
-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청구범위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되,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야 함
- 이를 통해 피고 제품 1의 대응 구성요소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2. 균등침해 판단 관련

- 원심은 피고 제품 1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균등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균등침해 성립
- 과제 해결원리 동일성 판단 시, 청구범위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실질적으로 탐구해야 함
- 피고 제품 1의 과제 해결원리가 특허발명과 다르므로 균등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 역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3. 전체 구성요소 구비 여부 판단

-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 그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함
- 모든 구성요소는 중요하므로, 일부를 권리행사 단계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할 수 없음
- 피고 제품 2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인 ‘냉온’ 기능 중 ‘온수’ 관련 구성을 포함하지 않아 ‘냉온정수시스템’ 또는 ‘냉온정수기’라는 구성요소를 전부 갖추지 않았으므로 침해 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이는 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는 중요하며 일부를 무시할 수 없다는 법리에도 부합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며, 이는 균등침해 주장까지 배척한 취지임을 분명히 하였다.

(2) 사건의 경과

날짜	단계	내용
2014년 4월	소송 제기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2015년 2월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이 청호나이스의 청구를 인용하여 코웨이에 100억 원 배상 및 제조설비 폐기 명령
2022년 7월 14일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청호나이스의 청구를 기각 (2015나2017331)
2025년 5월 15일	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청호나이스의 상고를 기각, 원심판결 확정 (2022다265123)

(3) 법원의 판단

• 가. 서울고등법원(원심법원) 판단:

- 이 사건 제1항, 제9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2 및 1-3, 구성요소 9-3 및 9-8의 기술적인 의미를 해석한 결과, 이들 구성요소는 각각 이에 대응하는 피고 제품 1의 구성요소와 동일하지 않음
-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는 원심 판시 제1 기술적 특징에 있고, 제9항 정정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는 원심 판시 제1, 2 기술적 특징에 있는데, 피고 제품 1은 이 사건 제1항, 제9항 정정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다름
- 피고 제품 2는 온수에 관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냉온정수시스템'이나 '냉온정수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1항, 제9항 정정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아님
- 청호나이스의 특허는 '냉수를 제빙원수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코웨이 얼음정수기는 냉수가 아닌 12°C~16°C 온도의 물로도 얼음을 만들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
- 미리 만들어 둔 냉수로 제빙하는 청호나이스의 방식과 달리 코웨이 제품은 제빙 과정에서 냉수를 미리 만들지 않는다는 점도 차이점임

• 나. 대법원 판단: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하 '대상제품 등'이라 한다)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대상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 "여기에서 대상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에 관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권침해소송 상대방의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대상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는 중요하므로, 그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청구범위 해석 및 구성요소 동일성, (균등 침해 판단, (전체 구성요소 구비 여부)**)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특허권의 균등침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배척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는 원심법원의 판단, 즉 피고 제품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5) 시사점

- **청구범위 해석의 중요성:** 판례는 **청구범위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되, 명세서의 발명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기술적 의의를 파악하는 것이 청구범위 해석의 핵심임**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특허 출원 시 명세서 작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하고, 침해 소송 시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 명세서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 **균등 침해 판단의 핵심 - 과제 해결원리:** 균등 침해 판단에 있어 ①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 ②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 ③변경의 용이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중요한 기준이며, 이를 판단할 때 **발명 설명의 기재와 선행기술 대비를 통해 특허발명 기술사상의 핵심을 실질적으로 탐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형식적인 구성요소 대비를 넘어 발명의 기술적 사상 자체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 **전체 구성요소의 중요성 (All Elements Rule):** 특허발명은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보호되며**, 대상 제품이 청구항 구성요소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침해를 부정한다는 법리. 특히, **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는 중요하므로 권리 행사 단계에서 일부를 무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특허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대상 제품이 그대로 포함하고 있거나 균등관계에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며, 구성요소의 누락은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기술적 차이점의 중요성 :** 본 사건에서는 양사 제품의 제빙 방식(냉수 사전 생성 여부, 사용 온도 등)의 기술적 차이가 침해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됨. 단순히 결과물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구현 방식에 실질적인 기술적 차이가 있다면 특허침해로 볼 수 없다.